

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

[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]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고배당플러스증권투자신탁(주식)
2. 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
3. 정정사유:
 - 결산 시 이익금 현금 분배 가능하도록 변경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33 조(이익 분배)	결산 시 이익금 현금 분배 가능하도록 변경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‘ 0 ’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<u>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.</u>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‘ 0 ’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<u>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.</u>
제 34 조(이익 분배금에 의한 재투자)	결산 시 이익금 현금 분배 가능하도록 변경	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<u>매수 한다.</u> ② 생략	① 수익자는 <u>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</u>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<u>매수한다.</u> ② 현행과 같음